

주식회사 누리펀딩대부는 채권양도인에게 이 약정서상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여야 하며, 대부거래 기본약관과 이 약정서의 사본을 교부하여야 합니다.

매출채권양수도계약서

- ★ 담보의 제공은 재산상 손실을 가져올 수도 있는 중요한 법률행위이므로 미리 덧붙 “채권양도인이 꼭 알아두어야 할 사항” 과 계약서의 내용을 잘 읽은 후 신중한 판단을 하시고,
- ★ 굵은선 □으로 표시된 란(당사자란, 제1조 및 계약서 끝 부분)은 담보제공자가 반드시 자필로 기재하시기 바랍니다.

2018 년 6 월 일

채 권 자 겸
채권양수인 _____ (인)

주 소

채 무 자 (주) 누리펀딩대부
주 소

채권양도인 (주) 누리펀딩대부
주 소



제1조 채권의 양도

① 채권양도인(이하 “양도인”이라 합니다)은 대부거래기본약관 을 승인하고, (주)누리펀딩대부(이하 “누리펀딩대부” 라 합니다)에 대한 다음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그의 소유인 이 계약서 끝 부분 “양도채권의 표시” 란에 기재한 채권 전액을 채권자에게 양도하고 누리펀딩대부 앞으로 그에 관한 채권증서의 인도를 마쳤습니다.

1. 피담보채무의 범위

채권자는 피담보채무의 범위를 달리하는 다음의 두 유형 가운데 어느 하나를 설정자가 선택할 수 있음을 설명하였고, 설정자는 그 가운데 **특정** 근담보에서 정한 채무(이자, 지연배상금, 기타 부채채무를 포함합니다)를 담보하기로 합니다.

특정근담보			
채무자가 채권자(본·지점)에 대하여 다음 약정서에 의한 거래로 말미암아 현재 및 장래에 부담하는 모든 채무			
년	월	일자	약정서
년	월	일자	약정서

한정근담보		
채무자가 채권자(본·지점)에 대하여 다음 종류의 거래로 말미암아 현재 및 장래에 부담하는 모든 채무		
거래,	거래,	거래

제2조 채권추심·변제충당

채권자가 제1조에 의하여 양수한 채권을 추심 한 때에는 채권자는 그 수령금으로 대부거래 기본약관 제16조에 준하여 채무의 변제에 충당할 수 있기로 합니다.

제3조 담보가치의 유지

양도인은 공사의 부실·납품의 불합격 등 양도인에게 책임 있는 사유로 말미암은 경우는 물론 불가항력·사변·재해·수송도중의 사고 등으로 말미암아 채권자가 통지하고, 양도인의 책임 있는 사유로 담보채권이 현저하게 감소한 경우 부족금에 관여하는 채권자의 지시에 따라 곧 변제하거나 상당액의 대신할 담보를 추가로 제공하기로 합니다.

제4조 기타 특약사항

채권양도인

(인)

※ 채권양도인은 다음 사항을 읽고 본인의 의사를 사실에 근거하여 자필로 기재하여 주십시오. (기재예시 : 1.수령함, 2.들었음)

1. 대부거래기본약관과 이 계약서 사본을 확실히 수령하였습니까?	* 수령함.
2. 위 약관과 계약서의 중요한 내용에 대하여 설명을 들었습니까?	들었습니다.

상 담 자	직 위 :	성명 : (인)
-------	-------	----------

[월 임대료 양도채권의 표시]

1. 원 인 계 약	년	월	일자	계약
2. 채 권 총 액	금			원
3. 지 금 기 일	년		월	일
4. 채 무 자				
5. 특 기 사 항				

[보증금 양도채권의 표시]

1. 원 인 계 약	년	월	일자	계약
2. 채 권 총 액	금			원
3. 지 금 기 일	년		월	일
4. 채 무 자				
5. 특 기 사 항				

[양도대출채권의 표시]

1. 원 인 계 약	2018 년 7 월 2 일자 대출거래약정서 계약		
2. 채 권 총 액	금 1,000,000 원		
3. 지 급 기 일	2018 7 월 일		
4. 채 무 자	(주)언리미	기성	
5. 특 기 사 항	대출금완차 양도(대출	회사의 매출채권 및 동산담보물 금회수자금으로 활용함)	

주의 : 특기사항란에는 지급조건과 원인계약이 납품계약일 때의 품명 · 수량 · 단가 등을 적습니다.

채권양도인이 꼭 알아두어야 할 사항

채권양도란

- 채권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계약에 의하여 채권을 양도인으로부터 양수인에게 이전하는 것입니다.
- 따라서 자기소유의 채권을 타인을 위하여 양도하는 경우, 타인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자기재산을 빼앗기게 될 수 있는 위험을 부담하는 행위입니다.

담보종류에 따른 책임범위

- [특정채무담보]는 채무자가 채권자에 대하여 부담하는 특정된 채무만을 담보하는 것으로, 그 채무가 연기 · 재취급 또는 다른 여신으로 대환 된 때에는 담보하지 않습니다.
- [근담보]는 채무자와 채권자 사이에 이미 맺어져 있거나 앞으로 맺게 될 거래계약으로부터 현재 발생되어 있거나 앞으로 발생할 채무 채권 최고액의 범위 내에서 담보하게 되는 것으로 두 가지 유형이 있으며, 각 유형에 따른 책임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.

[특정 근담보]

특정된 거래계약(예 : 년 월 일자 여신거래약정서)으로부터 계속적으로 발생하는 채무를 담보하여, 그 채무가 기한 연기된 때에도 담보합니다. 그러나 재취급 또는 다른 여신으로 대환 된 때에는 담보하지 않습니다.

[한정 근담보]

특정된 종류의 거래(예 : 당좌대출거래)에 대하여 이미 맺어져 있거나 앞으로 맺게 될 거래 계약으로부터 현재 발생되어 있거나 앞으로 발생하게 될 채무를 모두 담보하며, 그 채무의 연기나 재취급은 물론 같은 종류로 대환 된 때에도 담보합니다. 그러나 다른 종류의 여신으로 대환 된 때에는 담보하지 않습니다.

담보제공자가 연대보증까지 서는 경우

- 담보제공자가 연대보증을 별도로 서는 경우, (주)누리펀딩대부는 양도된 채권 외에도 채권 양도인의 다른 일반재산에 대하여도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.